

행정사무 조사요구의 건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23 |
|----------|----|

발의년월일 : 2006 . 11 . 1 .
발 의 자 : 이해경의원 외3인

1. 근거규정

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
2. 조사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· 제17조 규정에 의거 중구 관내 어린이집 및 가로정비업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조사대상(범위)

- 구립어린이집
- 가로정비업무

4. 조사시 행위원회

-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

【 관계법령 】

지방자치법 제 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

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.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)

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(조사)

②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.(1992.04.13)